

★ ◎

본부장 방침 제72호

문서번호	기전설계부-344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2.23
공개여부	공개
일상감사	대상아님

부 원	기전설계부장	건축설계처장	건설안전사업부장	
			02/23	
김우철	박기호	이우필	장달수	
협 조	부 원	오성근	파트장	정택용
	파트장	강대호	기계공사부장	김혁재
	첨단기술사업처장	이원풍		

(2015년도 제1회 인증신제품 적용심사 <주방용자동소화장치> 관련)

##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보고

서울특별시 SH공사

(건설안전사업본부 건축설계처 기전설계부)

## <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보고>

### 1. 관련근거

- 가. 2015년도 기계분야 제1회 인증신제품(NEP) 적용심사위원회 의결안
- 나. SH공사 인증신제품 구매 면제 요청
- 다.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구매면제 요청에 대한 회신

### 2. 추진경위

- 가. 2015.07.27. : 2015년도 기계분야 제1회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 개최
  - 심사 의결 사항 : 『적용 보류』
  - 제품 단가가 타 제품단가에 비해 현저히 높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구매 면제 요청을 하거나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 단가를 찾을 때까지 본 위원회의 의결 보류
- 나. 2015.07.29. : 국가기술표준원에 구매면제 요청
- 다. 2015.08.28. : 국가기술표준원 심의 결과 구매면제요청 ➡ 불수용
- 라. 2015.09.01. :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
- 마. 2016.01.20. : 국가기술표준원 이의 신청 심의 결과 회신 ➡ 불수용
  - 심의 결과
  - : 인증받은 신제품의 원가분석, 시장가격, 조달청단가 등을 고려할 때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어 이의 신청 불수용

### 3. 검토 결과

- 가. 우리공사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차에 걸쳐 국가기술표준원에 단가와 관련하여 구매면제 요청 및 이의제기를 하였으나, 불수용됨
- 나.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도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단가이며,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에 따라 LH공사에서도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구매를 하였기에 적정 단가로 인정
- 다. 인증신제품 업체와도 구매면제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,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 이하로는 수용 불가함을 고수
- 라. 이에 우리공사에서도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로 구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
- 마. 또한,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23조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의무 구매는 구매할 당시 인증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
- 바. 금번 심사 대상 제품의 인증기간은 (2015.04.20.~2018.04.19.)이며, 현재 설계 진행중인 건설공사부터 적용시에는 실제 구매시점에 인증 유효 기간이 초과

하는 등 의무구매 실적이 이루어질 수 없어 지속적인 민원 발생 예상됨  
사. 이에 기 발주된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후 구매가능한 건설공사에서 2016년3월  
~ 2018년4월까지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고자함

#### 4. 행정사항

- 가. 우리공사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의 의결 보류 사항은 본 방침에 의거  
서면결의코자함
- 나. 기계공사부 및 건설사업부는 지급자재구매시 반영

- 붙임 1. 인증신제품(NEP) 구매면제요청 결과 보고(1차,2015.09.01.)  
2. 인증신제품(NEP) 구매면제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회신(2차,2016.01.20.)  
3. 의결안(1차 인증신제품 적용위원회)  
4. 의결안 (2차 인증신제품 적용위원회)  
5. 자동식 소화기 직접 구매 계획. 끝.